

제333회 정례회  
행정자치위원회

2025년도 3분기

---

#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

2025. 11.

감사위원회

# 1. 개요

## 관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8항

“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장은 월별로, 위원회와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 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

## 보고 대상

- 기 간 : 2025. 7. 1. ~ 9. 30.(2025년 3분기)
- 대 상 : 서울시 공익제보센터 온·오프라인
  - 온라인(응답소 부패 · 공익신고), 오프라인(우편 · 방문 등)

## 접수 결과

- 2025년 3분기 총 57건 접수

<2025년 3분기 창구별 접수현황, 표 1>

(단위 : 건)

접 수 창 구	합 계	7월	8월	9월
공 익 제 보 센 터	공 익 신 고	25	10	9
	부 패 신 고	29	12	6
국 민 권 익 위 원 회	국 민 신 문 고	3	-	2
합 계	57			

\* 제보자가 접수시 선택한 접수창구

## 2. 제보 분류 및 분배

### 제보 분류

- 접수된 57건 분류 결과, 공익제보 해당 민원 53건

<공익제보 분류 결과, 표 2> (단위 : 건)

총 계	공익제보 해당 53건(93%)		일 반*
	부패신고	공익신고	
57 (100%)	29 (50.9%)	24 (42.1%)	4 (7%)

\*일 반 : 공익제보 해당여부가 불분명하지만 내용상 관련 기관 감사부서의 검토가 필요하여 이송한 민원

※ 조례상 ‘공익제보’의 범위

구 분	개 요	신고 대상 행위
부패 신고	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(정의) “부패행위”신고	<p>1. <b>공직자가 직무와 관련</b>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<b>법령을 위반</b>하여 <b>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</b>하는 행위</p> <p>2. <b>공공기관의 예산사용</b>, <b>공공기관 재산</b>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<b>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</b>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<b>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기하는 행위</b></p> <p>3.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</p> <p>※ 2호의 재산상 손해는 1호의 사익도모에 의한 부패행위 유형과 균형을 이루는 정도의 행위인 경우이며 단순 부주의나 직무소홀은 제외(판례)</p>
공익 신고	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(정의) “공익침해행위”신고	식품위생법, 의료법,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한 <b>공익신고자보호법 [별표]의 신고대상 법률 위반행위</b>
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	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	공정한 직무수행,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,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)등 서울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위반 행위

\***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법상 부패행위에 포함됨**

## □ 제보 분배

<제보 소관기관별 분배, 표 3>

(단위 : 건)

분배기관	유형	건 수	주요내용
<b>총</b>	<b>계</b>	<b>57</b>	
<b>본 청</b>	공 익	3	○ 복지시설 직원의 수당 부당수령 ○ 복지시설 직원 복무위반
	부 패	6	
	일 반	-	
	<b>소 계</b>	<b>9</b>	
<b>본부 / 사업소</b>	공 익	-	○ 사업소 직원 복무위반
	부 패	3	
	일 반	1	
	<b>소 계</b>	<b>4</b>	
<b>투자 출연 기관</b>	공 익	2	○ 투출기관 직원 복무위반 ○ 공유재산 불법전대 의심
	부 패	4	
	일 반	-	
	<b>소 계</b>	<b>6</b>	
<b>자치구</b>	공 익	19	○ 불법주차 ○ 재개발 조합장 감독요청 ○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○ 불법 현수막 조치요청
	부 패	16	
	일 반	2	
	<b>소 계</b>	<b>37</b>	
<b>타기관</b>	공 익	-	○ 타기관 공무원 비리 의심
	부 패	-	
	일 반	1	
	<b>소 계</b>	<b>1</b>	

※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,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및 조례의 비밀 보장 의무에 따라 세부내용 미표기

[참고사항]

- 타기관 소관 제보의 경우 국민신문고로 이관처리하거나 타기관 신고 안내 후 종결
- 공익제보센터는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제보의 분배자로서 접수된 제보를 관련 기관(자치구 포함)에 이첩하거나 제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민원은 일반민원 변경 등 처리

### 3. 제보 처리현황 (2025. 9. 30.기준)

<접수제보 처리현황, 표 4>

(단위 : 건)

총 계	처리완료(10)		종결(11)			진행중
	처 분	개선 등	안내	취 하	사실아님	
57	4	6	3	4	4	36

<처리완료>

- 처 분 : 신분상 조치, 행정처분 등 정식 조치
- 개 선 등 : 업무개선, 구두경고, 주의촉구, 개선약속, 계도 및 행정지도 등

<종 결>

- 안내 : 제보요건 안내, 보완요구, 타기관 신고 안내 종결
- 사실아님 : 조사결과 사실아님 종결

※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이며, 필요 시 연장 가능

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제6항